

〈일반논문〉

## 청일전쟁기(1894~1896) 주한일본영사의 영사보고와 ‘첩보’ 활용\*

최보영\*\*

〈목차〉

- I. 머리말
- II. 일본의 영사보고규정 수립과 영사보고
- III. 주한일본영사의 정보원과 첩보 활동
- IV. 주한일본영사의 거류민 보호와 첩보 활용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일전쟁기 주한일본영사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활용한 실태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항기 일본영사는 한국 내 정보를 취득·수합·정리하여 영사보고서 또는 첩보의 형태로 주한공사와 본국 외무성에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일본영사의 정보수집원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통과정과 그 활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의 한국 병탄은 군사력과 외교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2435)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전역에 상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군을 이식·이주시켜 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한국에 관한 소상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이를 침탈의 토대로 활용하였다. 특히 청일전쟁기 혼란한 상황에서는 첩보를 활용하여 거류지의 자국민을 안정화하거나 일본군의 전쟁 수행을 유리하도록 지원·협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본영사의 첩보활동이 한국민의 대일 인식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의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주한일본영사, 영사보고, 첩보, 밀정, 정보원, 청일전쟁, 동학농민군

## I. 머리말

1876년 이후 한국<sup>1)</sup>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생산한 영사보고는 한국을 병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특히 산업과 군사상의 목적으로 한국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영사의 첩보활동은 한국을 경제적·무력적으로 침탈하려는 일본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정보활동이었다.<sup>2)</sup> 1876년부터 1906년까지 약 30년간 일촉즉발의 한국 상황에서 영사

- 1) 개항 당시 한국은 조선이라는 국명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 시기가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을 아우르는 만큼 편의상 조선 역시 '한국'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다만 고유명사에서 '조선'을 칭한 경우에는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겠다.
- 2) 당시 일본인은 개항장 내에서만 체류 가능했고 한국 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호조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 일본상인들은 호조 없이 불법 잠행하였고 이들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는 불법 취득이며 여기서 첩보란 영사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과 경로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의 통상적인 영사보고와 첩보활동은 빛을 발하였다. 원래 개항장 내에서만 거주가 허가되었던 일본인들은 상업상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 치외법권을 등에 업고 불법적으로 개항장 밖으로 침투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일본영사는 개항장 내 행정관리를 넘어 한국 내지로 잠입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영사관경찰을 파견하여 첩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영사는 개항장 밖에서 수집한 정보를 본국의 외무성으로 끊임없이 송출하였다. 이로써 청일·러일전쟁기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과 일본군이 동학농민군 및 의병을 탄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넓게는 일본의 대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향후 식민지배의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영사보고와 '첩보' 활동의 전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일본 거류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민군 탄압의 지원 방식 일단을 이해하며 나아가 일제의 한국 침탈 양상을 새롭게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일본영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개괄적인 정리가 시도되었고 개항장 별로 파견되었던 영사들의 주재 현황과 활동 역시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분석되었다.<sup>3)</sup> 그나마 이들에 의해 생산된 영사보고 중에서 『通商彙纂』의 간행에 주목한 연구가 제출되었을 뿐<sup>4)</sup> 영사보고 내지 첩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기 일본인과 조선인 밀정에 의한 첩보 수집에 초점을 둔 연구가 있지만<sup>5)</sup> 사례 나열에 그치고 있다. 한편 박맹수는 농민군에 대한 정탐활

3) 최보영, 「개항기(1899~1906) 群山駐在 日本領事館分館의 설치와 主任書記生의 활동」, 『전북연구』 창간호, 2019; 「개항기(1876~1906) 주한일본영사의 활동과 한국 인식」,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8; 「개항기(1880~1906) 釜山駐在 日本領事の 파견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1, 2017; 「개항 초기(1876~1880) 釜山駐在 日本管理官의 파견·활동과 그 특징」, 『동국사학』 57, 2014.

4) 김연지, 「『통상휘찬-주한일본영사관보고』 한국편의 체제 검토와 사료적 가치」, 『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2016.

등을 재조일본인과 영사관경찰, 영사관 소속 주재무관, 내지행상, 유학생, 신문사특파원 등이 중심이 된 첩보 활동의 사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sup>6)</sup>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영사에 주목했다기 보다 ‘스파이’의 존재만 부각시켰다.

일본영사의 정보활동은 대체로 통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당시 한일간 무역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탈 양상을 파악하는 데 주요했다는 사실이 기존 연구를 통해 적지 않게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어떠한 규칙과 방식을 통해 생산되었는가는 연구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경제활동 이외에 정보수집, 즉 농민봉기와 같은 정치·사회적 변동과 청일·러일전쟁과 같은 극심한 혼란기에 이뤄졌던 영사의 특수한 정보활동 즉 첩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예컨대 1894년 9월 29일 일본공사 오토리가 김윤식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 오토리는 안동의 동학 수장 金炳斗와 하동의 崔達坤이 동래부백과 밀회를 하고 떠날 때 府署에 비치되어 있던 말 2필과 동전 2貫을 주었다는 영사의 첩보를 근거로 동래부백의 엄벌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sup>7)</sup> 이는 동학농민군과 지방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5)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2013;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 진압과 의병 전술의 변화 과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5, 2013; 남영우, 「일본군 호남 의병토벌대의 진중일지에 이용된 전투약도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7-3, 2012; 이승희, 「일제의 의병 ‘토벌’ 기록과 주한일본군 헌병대(1907-1910)」, 『동아시아고대학』 21, 2010; 이승희, 「한말 의병탄압과 주한 일본군 헌병대의 역할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치안구상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2008; 신주백, 「호남의병에 대한 일본 군·헌병·경찰의 탄압작전」, 『역사교육』 87, 2003.

6) 박맹수,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의 정보수집활동」, 『역사연구』 19, 2010; 「동학농민혁명기 재조일본인의 전쟁협력 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 (7) [東匪와 內通한 東萊俯伯 처리문제]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전기 의병기 일본군수비대에 의한 의병의 압도적 토벌은 주로 일본군의 수준 높은 무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뿐 무력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고찰하지 않았다. 사실 일본군이 의병에 대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투 이전 수행한 정찰과 같은 정보활동에서 의병의 일거수일투족을 먼저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즉 의병의 움직임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일본군 수비대 측으로 입수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지리적 이해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가장 적은 피해를 입고 의병에게는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물론 전시에서 정보활동은 군 내부의 정보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당시 한일관계에서 일상적인 정보활동의 주체는 영사였으므로 전시에 준하는 영사의 정보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한일본영사의 영사보고 규정과 체계를 살펴보고 혼란기 이뤄진 첩보 활동의 실태와 그 활용 양상을 살핌으로써 일본의 한국 침탈에서 주한일본영사의 역할이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일본이 해외에 영사를 파견한 이후 수립한 「영사보고규정」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또 이 규정에 의해 생산된 영사보고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주한일본영사가 한국 내지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한 정보원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또 정보원을 활용한 첩보 활동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상부로 유통되는지 파악해 볼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수집된 정보·첩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8)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86~295쪽.

주한일본영사가 남긴 보고서는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여기서는 대체적인 양상과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청일전쟁기와 전기의병기를 한정하여 대상시기로 삼고 『주한일본공사관기록』과 『한말의 병자료』(I, II) 등의 사료를 활용하였다.<sup>9)</sup>

## II. 일본의 영사보고규정 수립과 영사보고

### 1. 「帝國領事報告規定」 수립

일반적으로 영사보고는 해외에 파견된 영사가 정기적으로 본국에 보내는 현지의 통상·경제정보를 일컫는다. 영사의 기원은 대개 중세유럽까지 올라가지만 이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 것은 근대 이후라 할 수 있다. 자국민의 해외 이주가 점차 늘어나면서 영사를 파견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는 해도 실제로 영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역할이 컸다고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해외거주 자국민이 본국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부합하는 면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한 영사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의식한 국가차원의 명분일 뿐이었다. 그런데 국가간 무역량이 증가하고 상업상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사와 영사관의 역할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통상을 목

9) 영사보고가 정리되어 간행된 『통상휘찬』 역시 주요 사료이기는 하지만 『통상휘찬』은 대개 통상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영사의 첩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사료 추적이 필요하다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료조사 작업을 계속하여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논문의 구조와 방향에 조언을 해 준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적으로 해외에 거류하는 자국민이 증가하면서 영사는 자국민과 자국선박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자국 상인의 통상무역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자로 변신한 것이다.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砲艦을 앞세운 서양의 침략적 진출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이에 일본은 자원유출을 막기 위해 서양을 상대로 교역품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은 수출장려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에도 해외시장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교통·통신수단으로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모되는 정보획득을 개별 통상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 때 해외시장조사를 담당했던 주체가 바로 영사였던 것이다. 그들이 해외시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입수한 정보인 영사보고는 민간업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확했으며 객관적이었으므로 일본 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공신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영사에 의한 보고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일본은 영사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일본의 실정에 맞게 변용해 적용하였다.

일본의 영사보고 제도는 영사관 관제의 변화와 맞물려 수립되었으며 시기에 따라 변화했다. 메이지유신 이후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한 영사에게 부여한 보고체제 즉 '무역보고'에 관한 지령과 규칙은 메이지 수립 이후 8년이 지난 1875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 이전인 1872년 1월 29일 이미 최초의 영사관을 중국 상해에 설치해 영사제도를 운영하였지만 1874년 11월 9일에 가서야 비로소 해외파견 영사에게 무역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을 정도로 일본의 영사활용은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즉 이 때가 되

10) 金敬泰 編, 「解題」, 『通商彙纂』1, 麗江出版社, 1987, 3~4쪽.

어서야 일본 태정관은 일본이 외국으로 수송하는 물품 및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량·대가 또는 상인이 수출하는 물품 등을 통지하는 것은 貿易의 盛衰에 참고할 뿐만 아니라 해관을 관리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체계적인 영사보고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실시한 최초의 영사보고제도는 1875년 5월 「領事官貿易報狀規則」이었다.<sup>11)</sup> 영사가 주재국 특히 주재 지역의 商法과 慣例를 파악하고 통지해야 할 의무는 1878년 10월 8일 「日本領事官訓令」이 제정될 때 가장 먼저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sup>12)</sup> 이후 1884년 6월에 「貿易報告規則」을 거쳐 1890년 7월에 가서야 「帝國領事報告規定」으로 완비되어 영사에 의한 보고의무가 정착되고 세분화 되었다.

1875년 5월 17일 太政官達로 제정된 최초의 영사보고규정인 「領事官貿易報狀規則」은 모두 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것이었다. 제1조에서는 영사관무역보고는 내무성과 대장성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앞선 1874년 태정관달에서 영사의 보고를 대장성에만 국한했던 것과 달리 내무성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영사는 재류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무역관련 법규를 개정하면 반드시 이를 보고하고 또 무역조약·무역장정·등대규칙 등의 포고서와 세법·창고규칙·톤량세항 등 제규칙과 수입물품의 세목과 세목이 임시로 개정될 때, 상업·농업·鑛坑 등의 요건과 기타 일본에 득실에 관계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포고·포달서 및 제규칙의 抄書を 송부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상대국의 무역관련 법규의 파악은 통상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는 조치였다. 또 일본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11) 角山榮 編, 『日本の領事報告の研究』, 460~462쪽.

12) 外務省百年史編纂委員會 編, 『外務省の百年』 上卷, 1969, 125쪽.



를 파악해 무역상 이익을 최대한 기능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였다.

제2조에서는 1년 단위로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에는 해당 지역의 수입화물의 품종과 그 나라가 수출입하는 상대국을 기재해야 하고 수출입품 총량의 증감을 비교하고 유명한 산물의 시장 평균가격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상대국 개항장에서 교역되는 물품의 종류와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대국가의 기호 물품에 대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일본산 물품의 시장 진출 여부를 기능해보고자 한 것으로 생각한다.

제3조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출입품에 대한 제한조치가 행해질 경우 이를 보고할 것과 영사가 재류하는 곳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으로 수입하는 화물과 자국의 선박으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 부과하는 물품세의 차이 그리고 기타 유행병 예방법 및 출입항규칙 등 상세히 초록해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사가 재류하는 지역의 일본인이 일상적으로 일본의 물품을 사용하는지 다른 나라의 물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교역상 발생할지 모를 변수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컨대 전염병 등의 급작스런 돌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해외거주 자국민의 사용물품까지 파악케 한 것은 영사를 통해 개항장의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입수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본이 한국과 개항하기 직전에 마련한 위의 영사보고규칙은 수출입하는 품목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하라는 것과 무역과 관련한 조약 및 규칙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초록해 보고하라는 것으로 대체로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과 다른 나라 사이의 무역량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외국에 거류하는 자국민의 수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장성에만 한정되어 있던 영사보고를 내무성으로 확대한 조치는 국내의 해관업무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로 임함과 동시에 무역정보와 통상정보 등을 확충시킴으로써 해외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후 「무역보장규칙」과 「일본영사훈령」이 마련되었음에도, 일본 외무성의 예산 부족 등 경비절감이 거론되던 당시 상황으로서는 영사의 보고체제는 구체화될 수 없었다. 1884년 6월 「무역보고규칙」이 제정되고 나서야 영사보고체제는 겨우 정식화될 수 있었다. 이 「무역보고규칙」은 1890년 7월 「帝國領事報告規定」으로 개편되었다.<sup>13)</sup>

이 규정의 대체적인 내용은 「무역보고규칙」과 비슷하나 몇가지 특징적인 것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영사보고는 월보·연보·임시보고의 3가지 형태가 있었다. 월보는 영사의 주재지에서 일본과 관련한 중요상품의 수량·가격·기호·품질 등을 매일 보고하고 연보는 영사 주재지 및 주재국 내의 중요 개항장과 개시장에서 1년간 무역 사정을 총괄해 매년 한번 보고하는 것이다. 임시보고는 월보와 연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의 농업·공업·상업에 관련된 자가 참고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 통상에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당국에는 참고할 것을 제공하며 실업자들을 유도 또는 경계할 것들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제5조의 경우처럼 일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要市港’의 설정은 의미가 있다. 1890년 단계에서 일본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개항장 중에서도 인천을 가장 중요한 항구이자 시장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영사보고는 보고 형식과 구성 및 체계가 정해져 있고 보고 기간 역시 설정되어 있는 정례화된 보고체계를 의미한다. 이 보고는 외무성의 취사선택에 의해 재정비된 다음 활자화됨으로써 일반인에게 제공·공

13) 角山榮 編, 『日本の領事報告の研究』, 469~470쪽.

유되는 정보인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일반인에게 공유된 정보라는 의미에서 영사의 '첩보'와는 전혀 다른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2. 영사보고와 보고서 생산

개항기 영사보고가 『통상회찬』과 같은 구성과 내용으로 풍부해지기까지 영사보고 관련 규정은 수 차례 변화해 왔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영사에 의한 해외통상정보 보고내용의 변천을 살펴보면, 처음 영사보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일본 내 해관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단순한 정보의 입수였다가 차츰 수출입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해외의 무역사정을 파악해 실제로 무역에 종사하려는 상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단계로 확대·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파견·주재하고 있던 영사들에게도 그에 걸맞는 역할과 활동이 주어졌다. 영사보고를 토대로 간행한 보고서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영사보고 기록물의 변천<sup>14)</sup>

영사관보고	발행처	발행기간	간행횟수
『勸商雜報』	내무성권상국	1878.4~ 1878.12	1~20호
『輸出入商況月報』	대장성상무국	1878.1~ 1880.12	1회/1월
『商務局雜報』	대장성상무국	1879.12~ 1881.6	21~44호

14) 日本 外務省, 『領事報告資料収録目録(マイクロフィルム版)』, 雄松堂フィルム出版, 1983, 6~10쪽; 김연지, 「『통상회찬-주한일본영사관보고』 한국편의 체제 검토와 사료적 가치」, 『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2016, 225쪽, 〈표1〉 인용.

영사관보고		발행처	발행기간	간행횟수
『通商彙編』		외무성기록국 1883~1885 1886~1886.11	1881~ 1882	1회/1년
			2회/1년	
			3,4회/1년	
『通商報告』		외무성기록국 외무성보고과	1886.12~ 1889.12	2,3,4회/1월 1~131호
『官報(通商報告)』		대장성인쇄국	1890.1~ 1892.12	1회/1월
	『官報鈔存 通商報告』	내각관보국	1890.1~ 1890.10	1회/1월
『官報(公使館及領事館報告)』		외무성통상국	1893.1~ 1905.12.05.	
『通商彙纂』 외무성통상국		외무성통상국 제1과	1893.11.30.~ 1893.12.30.	1호, 2호 (1회/1월)
			1894.02.09.~ 1903.03.30.	1~259호
			1903.04.03.~ 1903.12	6회/1월, 6회임시증간/1년
			1904.01~ 1913.03	1호~

이들 영사에 의해 생산된 보고서는 「무역보고」 또는 「영사보고」 등의 명칭으로 생산·정리·유통되었다. 1875년 「영사관무역보장규칙」에 의해 내무성과 대장성에 보고된 정보는 내무성 勸商局의 『勸商雜報』(1호~20호, 1878년 4월~1878년 12월)와 대장성 상무국의 『商務局雜報』(21호~44호,

1879년 1월~1881년 6월)로 또는 『輸出入商況月報』(1878년 1월~1880년 12월)로 인쇄·유통되었다. 그런데 이들 보고서에는 주로 국내 통상 사정을 담고 있어서 본격적인 영사보고로 볼 수 없다.

영사보고의 효시라 할 만한 간행물로는 1882년부터 간행된 『通商彙編』을 들 수 있다. 『통상휘편』은 1883년분부터 상·하로 나뉜 이래 연간 몇 차례씩 간행되었으며 1886년에 『通商報告』로 이어졌다. 통상과 관련한 정보의 양적 증가와 통상업자들의 빠른 정보요구를 반영해 재간행되기 시작한 『통상보고』는 매호 약 20개의 항목을 1개월에 3~4회 발행해 急報性을 높였고 정보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상세한 정보요구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등 민간상공업자들의 요구에 응하고자 발빠르게 대처하였다. 예컨대 민간업자가 특정 상품에 대한 수출을 희망할 경우 각지의 영사관은 해당 상품의 시장조사를 비롯해 수입업자의 이름이나 수신자 등의 명단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1889년 12월 『통상보고』가 폐간된 후 1890년 1월부터는 『관보』에 「통상보고」란이 만들어져 영사보고가 이어졌고 이를 매월 한 번씩 『官報鈔存通商報告』라는 명칭으로 간행하기도 하였으나 곧 폐간되었고 이와 관계없이 『관보』의 「통상보고」란은 지속되었다. 한편 외무성은 이와 별도로 1893년 1월부터 『通商彙纂』이라는 이름의 영사보고를 발간하였다. 처음에는 매월 1회 간행되어 각 부현과 각지 상업회의소에 배포했으며 희망자에 한해 우송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무료로 배포하였다. 1895년 5월부터는 매월 2회로 늘렸고 1897년 6월부터는 매월 3회로 재차 증간했다. 이때 무료 배포를 중단하면서 발행부수는 기존 300부에서 1,000부 내외로 늘렸다. 또 1903년 4월부터는 매월 6회 발행으로 정기간행하기 시작했다.<sup>15)</sup>

15) 日本 外務省, 『領事報告資料収録目録(マイクロフィルム版)』, 雄松堂フィルム出版, 1983, 6~10쪽; 金敬泰 編, 「解題」, 『通商彙纂』 1, 麗江出版社, 1987, 4~5쪽.

『통상회찬』 이전에 발간된 영사보고서는 대개 통상관련 정보만을 취급했지만 『통상회찬』에서는 상업 정보를 기본으로 농업·화폐·잡부로 구분해 발간되다가 점차 내용의 폭을 넓혀 나갔다. 이후 관세·교통·수산·광업·이민 등으로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필요정보들이 새롭게 추가·보완되었다. 특히 일본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겼던 만큼 한국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는 「부속」 또는 「호외」 그리고 「임시증간」호를 발행해 지면 상 본 보고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보고하게 하였다.<sup>16)</sup>

『통상회편』 혹은 『통상회찬』 등의 영사보고는 정부에 의해 공식 간행·발행되어 유통되면서 민간무역업자와 상회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일본정부에게 더욱 유용한 영사보고는 통상관련정보 외에도 한국 내 정치정세나 여론이었다. 무역관련 영사보고가 통상을 활발하게 하여 국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이외의 영사보고는 자국민보호와 한국을 대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사는 개항장 이외의 한국 각지를 遊歷하거나 정보원을 선발해 파견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외무성 등 관련기관에 보고하였다. 이들 자료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필수요소였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만 통용되었을 뿐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국영사보고규정」 제6조의 임시보고 형태로 생산되고 전달된 이 보고서들은 주로 경제·통상을 제외하고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세변화 및 한국민의 반응·동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영사의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경제 이외의 영사보고서 중 대표적인 자료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다. 주지하듯 이 자료는 1894년(고종31)부터 국권이 침탈되는 1910년(융희4)까지 한국주재 공사관 및 각 지방의 영사관과 일본 외무성 사이

16) 金敬泰 編, 「解題」, 『通商彙纂』 1, 麗江出版社, 1987, 7쪽.

에 주고받은 기밀전보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와 훈령 등이 집약되어 있어 많은 관련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이들 자료를 영사보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각지에 주재하는 영사의 보고활동이 주요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과 활동이 일본 외무성의 정책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sup>17)</sup>

### III. 주한일본영사의 정보원과 첩보 활동

#### 1. 주한일본영사의 정보원

일반적으로 영사의 정보수집 방식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영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적 광활함과 경제·행정·사법·교육·의료 등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의 조사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대체 인력의 파견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다.<sup>18)</sup> 하지만 영사가 활용한 정

17)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사보고서류가 있다. 예컨대 외무성외교사료관 분류기호의 6문 1류 6항의 「出張及巡廻」에는 해외에 파견한 외교관이 해당국가의 타지역에 방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8) 러일전쟁 이후 일어난 의병에 대한 일제의 탄압 중에서 밀정활동을 펼친 헌병보조원에 대해서는 권구훈(「일제 한국주차헌병대의 헌병보조원 연구」, 『사학연구』 55·56, 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신창우(「憲兵補助員制度の治安維持政策的意味とその實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9, 2001), 신주백(「湖南義兵에 대한 日本軍·憲兵·警察의 彈壓作戰」, 『歷史教育』 87, 2003), 홍순권(「한말 경남지역 의병운동과 일본군의 의병 학살」, 『군사연구』 131, 2011), 조재곤(「러일전쟁 이후 의병탄압과 협력자들」, 『한국학논총』 37, 2012), 이승희(통감부 초기 일본군헌병대가 운용한 한국인 밀정 -한국주차군(韓國駐劄軍)의 기밀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

보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원에게 지급된 활동비 내역 역시 자료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영사가 발송한 각종 사료에서 정보원을 추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원은 영사가 관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발탁해 해당 지역에 파견한 일반인이며 신분은 노출되지 않고 한국인과 일본인을 주로 고용했다. 영사보고 중에 영사가 경부·순사 등 관원을 파견하지 않고 파악한 대개의 내용은 이들 정보원에 의해 제공받은 것이며 경부도 필요에 따라 정보원을 활용해 정보를 입수하였다.

일본인 중에서는 손쉽게 파견할 수 있는 영사관원 중에서 영사관경찰인 경부와 순사가 대표적이다. 1894년 7월 한성영사 우치다 사다쓰지[内田定楯]는 한반도 남부지방의 농민군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한성영사관 소속 警部 오기와라 히데지로[荻原秀次郎]를 파견하였고 오기와라는 영사의 명령을 받아 全州·秦仁·古阜·扶安·金堤·金溝 등지의 민란 발생 지방을 순회하였다.<sup>19)</sup> 나리아이 기시로[成相喜四郎]이라는 한성영사관부 순사는 1894년 6월 3일 우치다[内田]영사에게서 동학당에 관한 일을 탐지하기 위해 공주지방에 출장을 명받았다. 같은 날 川幡순사 高島어학생과 함께 경성을 출발해 6월 6일 충청도 공주에 도착해 6일간 체류하면서 전라도 지방의 동학당의 形成, 官軍의 진퇴 및 이에 대한 아산지방 청병의 동지를 탐지해 전보로 보고하였다.

---

으로-], 『일본학』 44, 2017)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의병활동을 정탐하는데 파견된 자들은 대체로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경시, 경부, 순사, 순검 등이었고 대한제국 진위대의 하급군인 출신의 헌병보조원으로 이뤄졌다. 또 지역의 이장과 면장 등 지역민의 제보에 의해 정탐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후기의병 시기 정탐활동은 한국인 밀정의 활용도가 전기의병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의 활용주체가 영사에서 군대로 옮겨간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1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三.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三 > (12) [南部民亂地方 視察復命] > 3) 民亂地方 시찰 復命書 進達의 件



또한 동학의 중심인 전주에 들어가 「체류 7일간 오직 소란 후의 形情을 보고」하는 등 거류민 「보호취제」라는 임무를 넘어 긴박한 한국정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sup>20)</sup> 이들 조사자는 복명하면서 각 군의 의병은 '오합지졸'로 그다지 깊게 생각할 수준은 아니며 단발령 때문에 일시적인 분개함에 일어난 것으로 완고한 무리일 뿐이지 감히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의병에 대하는 진주 부근의 한국인들은 의병의 위력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의병을 진정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sup>21)</sup>

또 1896년 7월 한성영사 가토 마쓰오[加藤增雄]는 철원의 폭도가 개성을 습격하려 한다는 급보를 접하자마자 일본인 행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성영사관 소속 警部 카도이 타쓰노스케[門井辰之助] 외 巡查 10명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카도이 외 10명은 경성을 출발해 육로로 고양을 거쳐 개성에 도착한 후 한국인을 상대로 의병의 상황을 탐문하였다.<sup>22)</sup> 경부와 순사를 조합하여 파견한 것 말고도 순사만으로 지방에 파견한 사례도 적지 않다. 경성영사관 소속 순사 와타나베 타카지로[渡邊鷹次郎]<sup>23)</sup>는 1894년 9월 동료 순사 太田芳太郎와 弘瀨高衛와 함께 경기도 송파에 동학당이 모인다는 풍설을 접하고 수비대와 함께 송파로 파견되어 해당 지역을 정탐하였다.<sup>24)</sup>

20)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 2005, 76~77쪽.

21) 김상기 편역, 『일본외교사료관 소장 한말의병자료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87쪽.

2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권, 七. 本邦人被害에 關한 件 一·二 > (63) [開城에 暴徒來襲 상황 急報 件]

23) 와타나베는 1900년 6월 12일 대한제국 정부가 우용정을 울릉도에 파견할 당시 일본에서도 함께 시찰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경부로 참여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10월 27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반포하였다.

두 번째로 영사는 해당 지역에서 잠행하여 활동하던 일본인 상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였다.<sup>25)</sup> 일본인 상점에 고용되어 있던 고용일본인들이 곡물매집을 목적으로 내지로 출장을 갔을 때 그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영사관에 보고되었던 것이다.<sup>26)</sup> 1894년 5월 인천영사 노세 타쓰고로[能勢辰五郎]는 동학농민군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인천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현지 상황을 청취하였다. 이 때 인천영사가 청취한 사람들은 인천항의 力武商店 고용인이었던 조지마 토라노스케[城島虎之助]·河野商廬 고용인 아라이[新居歡次郎]나 일본인 河永直吉, 小川梅造 그리고 한국인 통역, 順五船 선장인 川向榮之助 등으로부터 충청도 이남, 군산·김제 일대 등지의 상황을 청취할 수 있었다.<sup>27)</sup> 이들 상인이나 거류민들에게 수집한 정보는 주로 「청취서」라는 문서로 정리되어 상부에 보고되었다.

1894년 6월 4일 우치다 한성영사는 6월 1일 충청도 淸風 지방에서 귀경한 와타나베[渡邊倉吉]에게 남부지방의 민란에 대한 상황을 청취하였다. 와타나베에 따르면 “동학당은 충주·청풍 부근 지방으로부터 속속 남하하고 있다. 또 江原道 지방에서 와서 가담하는 자도 있다. 근래에는 강원도의 동학당은 따로 새 깃발을 행진 중에 들고 곧 경성을 칠 것이라는 소문”이라는 것이다.<sup>28)</sup>

2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 (3) [京畿道 松坡 부근의 東學黨 집결에 대한 대비]

2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二.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二 > (8) [全羅古阜民擾 日記 寫本 送付]. 박맹수(「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의 정보수집활동」, 『역사연구』 19, 2010, 157~158쪽)는 巴溪生의 「全羅古阜民擾日記」를 분석하여 재조일 본인의 정보수집 활동 양상을 파악하였다.

26) 한우근, 「개국후 일본인의 한국침투」, 『동아문화』 1, 1963, 20쪽.

2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一.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一 > (25) 東學黨에 關한 報告

2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一.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一 > (29) [全羅民擾件에 關한 聽取書]

세 번째로 영사는 시찰원을 파견하여 지방의 상업현황을 시찰할 수 있었다. 한성에 재류하는 일본 상인은 상업회의소를 결성한 다음 1891년 4월 상업회의소 조례를 제정하여 영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당시 스기무라 후카시[杉村瀧] 한성 영사는 이를 조례로 시행하기 보다는 체제를 바꿔 영사의 이름으로 발포하고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하였다. 이 때 개정안으로 제시되었던 조례 중 제6장 기타 제24조에는 “상업현황 시찰을 위해 지방에 시찰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의 의결을 거쳐 뽑아서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 제25조에는 “경성 안에서 상업을 하는 일본인에게 그 업무상에 관해 질의를 요하거나 또는 의견을 진술할 때는 본 회의소에 할 수 있다”. 즉 영사는 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에 시찰원을 파견하고자 하였고 상업을 하는 일본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영사의 질의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sup>29)</sup> 실제로 영사가 시찰원이라는 명칭의 정보원을 파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많은 자료에서 시찰 보고가 존재하는 만큼 시찰원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했던 것 같다. 이들 정보원 외에도 평민 신분으로 보이는 일본인을 한국인 복장으로 변장시켜 정찰을 시킨 사례들도 다수 보인다.<sup>30)</sup> 또 지방으로 파견한 밀정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밀정은 신원이 발각되어 피살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31)</sup>

그렇지만 최소한 청일전쟁 이전 한국인 밀집지역에 일본인을 직접 파견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영사관원과 영사

29) 『사료 고종시대사』 16권, 「경성 주재 일본 영사, 일본 외무차관에게 경성 주재 일본인 상업회의소 조례 개정에 관해 상신함」

3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 (29) [忠州地方 偵探人 被殺에 關한 報告] : 김상기 편역, 『일본외교사료관 소장 한말의병자료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29쪽.

3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 > (18) 淸州出張兵 撤收 및 東學徒 彙報

관경찰관원이 실제로 한국의 지방에 파견되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를 보충해 줄 인원으로 영사가 지목한 인물은 친일적이거나 돈을 목적으로 한 한국인들이었다. 중앙정부의 고위관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관찰사·군수 그리고 그 이하 말단의 이장·동장·면장 등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반민족적 행위는 생존의 문제에 굴복해야 했던 당시의 시대적 조건이 작용한 측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의병을 탄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1894년 11월 11일, 일본 특명전권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후비보병 제19대대 西路行 中隊士官에게 崔胤華라는 한국인을 동학당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도 천안군으로 파견했다며 그가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32)</sup> 일본 공사가 직접 최윤화를 발탁하여 천안으로 파견했다기 보다 영사가 발탁하고 파견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사가 일본군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대개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는 드물고 일본에 협력한 한국인은 성명 불상인 경우가 많다.

1896년 5월 6일 부산영사 사무대리 사카다 주지로[坂田重次郎]가 외무차관 하라 타카시[原敬]에게 보낸 기밀문서를 보면, “진주 폭도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한 한인의 시찰일기”와 그곳에서 돌아온 한인의 담화 요점을 기록한 별지 두 개가 첨부되어 있다.<sup>33)</sup> 첫 번째 한인은 정탐일기에서 “폭도의 탐정이라고 하는 자 3명이 와서 거주지와 성명 등을 묻기에 거짓으로 전라도 화순 사람으로 장사를 하러 부산에 갔다가 지금 귀향하는

3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査派遣의 件 一 > (45) [東學黨偵探에 따른 편의제공과 東學黨關係 探問調査] > 1) [朝鮮人 崔胤華]

33) 김상기 편역, 『일본외교사료관 소장 한말의병자료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115~117쪽.

증이라고 답변하니까 통행에 차질이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이 한국인은 의병 측에서 파견한 탐정에게 노출되어 불심검문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때 자신의 신분과 통행 목적을 거짓으로 둘러대면서 자신의 활동 목적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명 불상의 이 한국인은 일본영사의 사주를 받아 정탐을 목적으로 파견된 밀정이 틀림없다. 의병 역시 일본이 파견한 한국인 밀정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의병 측에서도 탐정을 파견해 의병 측 정보 노출에 예의주시하고 있던 예민한 상황을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인은 경상도 함양을 지날 때 의병에게 붙잡혀 진주의 의병 본진에 호송되어 감옥에 11일간 구치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음력 2월 6일 체포되어 2월 17일까지 여러 차례 심문을 받고 다행히 방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인물이 일본영사가 파견한 밀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진주의 의병에게 포획되어 11일간 구치되었던 것이나 진주의 의병 대장이 누구이며 이들 의병 대장의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의병 활동에 찬동하지 않거나 일본 측에 찬동한 인물로 보여진다.

이 외에도 1896년 4월 부산영사 가토 마쓰오[加藤増雄]가 외무차관 하라에게 보낸 공문서에는 “지난 날 폭도의 정황을 정찰하기 위해 진주성내에 진입한 한인”이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34)</sup> 또 한성영사 우치다가 평양에 파견한 경부 히라하라 아쓰무[平原篤武]는 한국인에 의한 일본인 살해 위협이 큰 지역에 李秀義라는 자를 ‘고용’하여 “각 지방에서 평양으로 오는 여행객에 대해 정탐”하게 하였다고 하였다.<sup>35)</sup> 이 한인 역시 영사의 사주를 받아 의병의 주둔지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하려 한 일본 측 밀정으

34) 김상기 편역, 『일본외교사료관 소장 한말의병자료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103쪽.

35) 김상기 편역, 『일본외교사료관 소장 한말의병자료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29쪽.

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영사 측 일본인과 한국인 밀정과 달리 동학농민군과 의병 측에서 일본군으로 보낸 밀정 역시 존재하였다.<sup>36)</sup>

## 2. 주한일본영사의 첩보 활동과 보고체계

영사의 첩보 활동은 척왜척양을 기치로 내걸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상 일본인인 영사 또는 영사관 소속 관원이 직접 보고 듣는 행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사는 비밀리에 이른바 ‘첩자’를 고용하여 정보를 취득하였다.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은 이전 擧義와 달리 오직 일본을 배척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지를 여행하는 일본인은 물론 일본병참기지와 수비대 그리고 헌병분파소 등 부대를 습격하기도 하였다<sup>37)</sup>. 특히 동학농민군이 활동하고 있는 지방 깊숙한 곳에서 일본인 체류자들의 안위는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것이다. 예컨대 김구가 황해도 치하포에서 일본상인을 사망케 한 사건은 잘 알려져 있다.

영사는 최소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당 영사관의 관할구역과 그 밖의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해야 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사에게 첩보를 전달해 준 보고원은 일본 측 영사관원과 상인 그리고 일본군 수비병이었으며 한국 측 밀정과 관찰사 휘하의 관원들이었다. 영사는 이들 정보원을 활용해 첩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청취, 偵探, 探偵, 探聞, 探報, 밀정, 시찰 등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6) 동학농민군과 의병 측에서 파견한 밀정의 현황과 활동은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37) 『부산부사원고』 14, 「東學黨匪の再起と釜山居留人への告示」, 541쪽.

영사 첩보는 그 정보원의 유형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우선 영사가 개항장 이외의 장소에 정보원을 파견하지 못한 때에는 한국 내지에서 활동하다가 개항장으로 돌아온 상인 등을 통해 현지 사정을 파악하는 '청취' 작업을 수행하였다. 1894년 당시 한국에서 무역 등을 목적으로 거류·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실제 개항장에 정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에 비해 일본에 의한 공권력의 비호를 받기 어려웠다. 한행이정의 확대에 따른 내지행상 범위가 무제한에 가깝게 확장된 당시에는 이미 많은 일본 상인이 한국 내지에 잠입하여 무역행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개항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자국민 보호 수단이 한국 내지의 일본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 한국인과 갈등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영사재판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을 뿐이다.

둘째,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동학농민군이나 의병의 상황을 정탐·탐정·탐문·탐보하였다. 영사는 영사관 경부와 순사를 소요가 일어난 각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을 순회하며 소요 상황에 대해 정탐·탐문 등의 활동을 펼치게 하였다. 또 순회 과정에서 일본 상인에 대한 상황도 파악하였다. 이들 정탐 활동은 한국 정부에게 關文과 여행권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수행하기도 하였고<sup>38)</sup>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료 상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사례로는 시찰의 방식을 통한 첩보활동이다. 시찰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사가 지방으로 시찰원을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일반적인 활동이었다.

위와 같은 영사 첩보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그 방식 만큼이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일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가를 들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에 의한 일본인 6명의 집단 살상 사건이 있는 지 따

3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三.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三

2년이 지난 1896년 9월 평양과 개성을 시찰케 했던 한성영사의 보고를 살펴보자. 이 때의 보고에는 “일본인 거류지는 물론이고 각지라 하더라도 이제는 일본인을 마음대로 살육하거나 폭행하려는 자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여행자의 대표적 숙소인 여관 같은 곳에서는 “조금도 타관살이의 부자유를 느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평양과 개성 인근 일본인은 한국이 타국이 아니라 모국처럼 편안함을 느낄 정도였다. 나아가 이곳의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일본군대와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어서 폭도의 습격이 있더라도 우리 행상자가 있으면 바로 격퇴하기 때문에” “무사히 생활할 수 있다”고 조사하였다. 이는 곧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이 양호함을 알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한국 내지 시찰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동학군과 의병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였다. 1896년 9월 이전 평안도의 의병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로 평안도 광산의 坑夫가 원래 6천 명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3~4백 명으로 줄게 되면서 갑자기 생계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갱부들이 ‘도적’의 무리에 가담해 나그네의 재물을 빼앗다가 의병이 봉기하자 이에 가담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또 의병이 휴대한 무기는 구식으로 무딘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깔보면 안된다고 전제한 뒤 평양진위대의 노획품 중에 12연발총이 확인됨으로 의병 중에 12연발총을 가진 자가 있으며 뇌관과 탄환의 제조법도 알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의병의 봉기 원인에 대해서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한 사실에 분개한 것도 있고 생계 유지가 궁핍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sup>39)</sup> 정보원은 의병의 봉기원인과 의병이 휴대한 무기수준 그리고 의병에 가담하는 한국인의 상

39) 김삼기 편역, 『일본외교사료관 소장 한말의병자료 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51~52쪽.



태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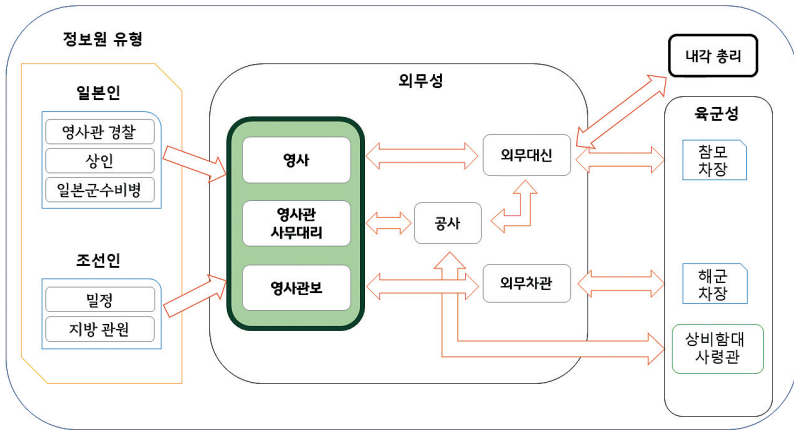
이외에도 내지에 파견된 시찰원들에 의해 각 지방 의병 봉기의 현황과 상황, 일본화폐 통용의 정도 및 종료, 평양재류 일본인 청국인의 상황, 구미인 및 청국인 여행자의 유무 및 이에 대한 감정, 현 정부에 대한 감정, 계림장업단 등 행상인의 현황, 한국 관리의 일본인 행상자에 대한 상황, 행상자에 대해 취급한 사항, 수출품, 수출입품 조사 등 무역·통상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취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사의 지시를 받은 첩자가 정보 탐문 활동을 벌인 이후의 정보 유통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는 첩보만큼 중요하다. 정보를 수합한 영사는 이를 공사관에 보고하고 공사관은 일본외무대신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였다. 또 외무대신은 이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역순으로 훈령·훈시를 내린다.<sup>40)</sup> 평시에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이렇게 유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청일전쟁과 의병 봉기와 같이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격동기에는 단선적 정보유통만으로는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유통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영사가 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의 외무성 외무차관에게 전신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부산의 무로다 총영사는 1894년 3월 5일자 외무차관에게 보내는 공신에서 「경상도 함안에서 폭동」을 보고했고 5월 7일자에는 「김해부에서 민중폭동」을 보고했다. 대개 이들 폭도는 가혹한 세금에 의한 생활고에 못 이겨 벌인 폭동인데 무로다가 파악한 김해부의 민중 봉기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왜냐하면 “김해부는 당항(부산-필자)에서 거리가 겨우 7리로 한행이정 내이므로 겨류민이 왕래하는 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 소요가 멈추지 않는다면 당관원을 현장에 파견해 實地를 探見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sup>41)</sup> 이들 김해부민

40) 한우근, 「개국 후 일본인의 한국침투」, 『동아문화』 1, 1963, 20쪽.

의 봉기가 칼날이 일본인에게 향하고 있지 않더라도 김해는 부산거류지와 가깝고 한행이정 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거류민이 뜻밖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 소요가 계속된다면 영사로서 실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영사는 거류지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근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를 본국의 외무차관에게 직보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전달 경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정보원 유형과 영사 보고 체계(1894~1896)

위의 〈그림〉은 1894년~1896년 사이의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검토하여 추출한 보고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sup>42)</sup> 이 시기는 적어도 한국 내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영사와 영사관을 거쳐 외무성 상급 단위로 보고되었다. 영사 보고는 거의 대부분 공사를 거쳐 외무대신으로 올라가지만 외

41)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 2005, 76쪽.

42) 자료의 성격 상 모든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고빈도와 그에 따른 중요도에 대해서는 일반화할 수 없었다.

무대신에게 직접 보고할 때도 적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보다도 외무차관에게 보고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정보는 시의성에 따라 보고체계가 달라지거나 남아있는 사료상의 한계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일 수 있으나 외무성 내의 보고체계는 “정보원 ⇔ 영사 ⇔ 공사 ⇔ 외무차관 ⇔ 외무대신”으로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仁川兵站司令官 이토[伊藤祐義]가 일본공사 이노우에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으로 인정되는 자는 “체포하여 京城 公使館으로 보내고, 동학당 거물급 간의 왕복문서, 혹은 정부 내부의 관리나 지방관, 또는 유력한 측과 동학당 간에 왕복한 문서는 힘을 다해 이를 수집하여 함께 공사관으로 보내라”고 하여 병참사령관과 공사 사이의 문서 왕복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3)</sup> 또 공사는 병참사령관에게 “巨魁를 체포했을 경우 서류를 압수하여 우리 영사에게 인도·규명토록 하고자”하였다.<sup>44)</sup>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군에게 체포된 농민군 대장은 영사에게 인도되었고 영사는 이들을 심문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인으로 영사에게 재판관할권이 있지 않았으므로 영사는 한국 외무대신에게 회심을 요구할 뿐이었다.<sup>45)</sup>

일반적으로 영사가 취득한 정보는 공사를 거쳐 외무대신으로 올라가 최종적으로는 내각총리에게 보고된다. 이렇게 보고된 정보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대체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한국을 침탈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정보, 예컨대 한국의 특정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

4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 (39) [後備步兵 第19大隊 運營上의 訓令과 日程表] > 1) [後備步兵 第19大隊에 關한 件]

4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 (53) [慶尙道 東學黨剿滅의 方策에 關한 訓令 要請]

4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 > (6) [廣州暴動事件에 關한 諸報告] > 2) [東學黨嫌疑者 高宗柱 등에 對한 會審要求]

품 가격과 같은 경제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의 기후와 지리 나아가 지역민의 성향과 풍속과 같은 정보가 필요한 일본으로서는 영사가 생산해 정리·보고한 지역 관련 정보는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폈듯이 “영사 ⇄ 공사 ⇄ 병참사령관 ⇄ 공사 ⇄ 영사”의 정보 유통은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보고체계라 할 수 있다.

## IV. 주한일본영사의 거류민 보호와 첩보 활용

### 1. 거류민 보호 및 안정화

영사가 불법적으로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 탐지한 첩보는 영사의 고유 업무인 거류민보호에 주로 활용되었다. 척왜양창의를 기치로 내건 동학농민군의 활약은 한국에 거류하는 일본인에게는 어찌보면 사형선고와 다를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일본인이 살해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는 당시 일본인에 대한 강한 저항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188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을 제외하고 한국에 거류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 반면 1890년대에는 개항장이 확대되고 내지 행사권을 통해 한국 내지로 통상활동을 벌이는 일본인이 많았지면서 영사의 거류민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동학농민군에 의한 일본인 집단 살상 사건이 벌어졌다.

청일전쟁이 한창인 1894년 9월, 충청도 천안군에서 일본인이 동학당에게 살해되었다는 풍문이 일본영사관에 접수되었다. 이 때 살해된 일본인은 1~2명이 아니라 6명이었는데 일본인이 집단으로 살해되는 큰 사건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인을 살해하고 자신들의 주살행위를 숨기지 않

고 방을 붙여 공개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일본영사는 즉각 한국 외무아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천안군수는 일본인 살해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오토리 게이ске[大鳥圭介] 특명전권공사는 한성영사 우치다 사다쓰지[内田定槌]에게 훈달하여 일본인 피해자의 성명과 피살경위를 자세하게 조사하게 하고 한국 지방관에게는 가해한 동학농민군의 수색을 독촉하기 위해 순사 3명을 파견하였다. 천안으로 파견한 순사에 따르면 이 지방에서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하여 가해자를 색출하고 조사하는 일에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일본 순사는 일본인의 피해 사실만을 확인한 채 돌아왔다. 이에 따라 오토리 전권공사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서도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눌린 지방관의 자세만 보더라도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선뜻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오토리는 일본군 후비보병이 진주하여 직접 무력을 동원해 일본인 살상사건을 처리할 방안을 제안하였다.<sup>46)</sup>

동학농민군의 일본인 살상은 단순히 개인 사이의 갈등 관계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에 의한 일본인 살상사건은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나 문화의 이질감에서 오는 개인적 영역의 사건이었지만 동학농민군에 의한 사건은 척왜양이라는 창의 명분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영사에게는 풀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소규모의 일본인 피해는 적지 않았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영사는 한국 내지에 첩보원을 파견해 사건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였다.

청일전쟁 이전인 1894년 5월 24일 동학농민혁명의 여파가 어디로 미

4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忠淸道 天安郡에서 日本人이 東學黨에게 살해된 件」 (1894.09.26.)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로다 부산영사는 일본정부가 부산거류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군함 大島號를 급파했음을 거류민에게 알렸다. 이어서 31일에는 “당국인(한국인)에게 獵銃·화약·호신용도검 등을 절대 교부하지 말 것을 포달하였다.<sup>47)</sup>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불온한 상황을 미리 단속하고자 한 것이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전쟁 소식이 속속 부산으로 입수되었다. 전투의 승패와 상관없이 부산에는 일본군이 한성에서 패배해 거류민 전부가 살해당했다는 가짜뉴스가 심심치 않게 유포되었다. 무로다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봉기가 일어나 이에 대해 현재 부산항과 한성 그리고 인천항 부근에서 불온한 전보가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곧바로 이곳 영사관에서는 가능한 고시를 할 것이므로 거류민은 뜬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각자 현업에 종사하길 바란다”고 고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의 승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반대로 부산거류 청국인은 삼삼오오 귀국길을 서둘렀다. 1894년 7월 20일 경에는 모든 청국인들이 귀국해 부산거류지는 텅비게 되었고 이들의 재산은 한성주재 영국영사관이 보호하게 되었다. 7월 31일 나가타키 히사키치[永瀧久吉] 총영사 사무대리는 이러한 내용을 고시하였다.<sup>48)</sup>

전쟁 중 무로다 부산영사는 거류민 일반에게 재차 고시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불안해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무로다는 9월 경 안동 부근에서 활동하던 동학농민군에 대해 “자칭 동학당이라고 자칭하는 난민”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이 “우리를 이워 우리 병참사령부에 대해 불온한 거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조선정부는 鎭撫를 위해 대구영의 병사 2백 여 명을 보

47) 『부산부사원고』 14, 「室田總領事の武器供給禁止布達」, 486쪽; 「釜山の居留民保護のため軍艦來舶」, 486~487쪽.

48) 『부산부사원고』 14, 「釜山等の支那人歸國を告示」, 518~519쪽.

냈고 또 우리 병참감부에서도 소재지 각 병참부와 합해서 조선병사와 함께 이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하게 착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때에 浮說이나 訛傳에 매혹되지 말고 거류민 일반은 각자 마음을 놓을 것”을 당부한 것이다.<sup>49)</sup>

청일전쟁에 대해 평양을 공격해 함락한 일본군은 승전 소식을 한성공사관에 전달하였고 공사관은 이를 부산총영사관에 전달해 게재하였다. 한성에서 1894년 10월 26일 전달된 이 소식은 “압록강을 건너 주렌성 공격”이라는 제하로 거류민 일반에게 전달되었다. 전보에는 “군은 지난 밤 압록강에 가교를 만들어 오늘 아침 의주 서북방면 부근의 적을 격파하고 주렌성 북방의 고지를 점령하고 새벽 무렵 주렌성을 공격”하였다는 것이다. 뒤이어 11월 4일에는 지난 10월 31일에 봉황성을 점령한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이어 金州·大連·岫巖縣 점령 소식과 旅順 함락을 고시함으로써 일본군의 연전연승을 거류민에게 알렸다.<sup>50)</sup> 이처럼 영사는 청일전쟁의 상황에 대해 관련 정보가 입수 되는대로 거류민에게 고시하여 거류민의 안정을 꾀하였다.

한편 영사와 공사는 전신을 통해 수시로 긴급한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동학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민란 발생에 대한 정보를 상호 요청하고 있었다.

지난번 이래로 全羅道·忠淸道에서 발호한 동학당 및 기타 민란에 관해서는 發 제66·81·86·86·92·94·97 및 104호로 알려주셔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匪徒의 상황에 관하여 향후에도 들은 것을 차례로 알려주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이 徒黨이 소란을 피우는 곳이 모두 이곳과 이웃한 道이기

49) 『부산부사원고』 14, 「東學黨匪의再起と釜山居留人への告示」, 541쪽.

50) 『부산부사원고』 14, 「釜山領事館の皇軍連戰連勝告示」, 528~530쪽.

때문에 釜山港 재류인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무리들이 道 경내로 침입할 것 같은 상황인지, 道 내에서도 따로 민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지에 대해 듣고 계시면, 곧바로 전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sup>51)</sup>

위의 영사가 동학당의 거동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이든 그와 관련한 정보를 영사관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성에서도 영사는 급박한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 한성영사는 일본공사와 함께 한국인의 척왜양운동에 대해 매우 긴박하게 대응했다. 우선적으로 한성의 거류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동학교단이 벌인 '척왜양'운동의 최고점이었던 한성복합상소에 대응하였다. 영사는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고 한국어가 능통해서 한국의 실정을 통달한 거류민을 고용해 서울 근교를 비롯한 경기도와 충청도의 동학교도에 대한 정탐활동 등을 했다.<sup>52)</sup>

이러한 정탐활동을 통해 한성영사는 “최근 동학당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외국인 배척을 내세우며 남부지방에서 들고 일어났다”며 동학혁명의 발원을 설명하면서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상경해 한국정부에 강력히 상소한 일도 있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추가 상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한성에 거류하는 일본인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국정부에게는 책임지고 외국인민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도 자국민에 대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포달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킬 것을 지시하였다.

-동학당의 거동과 관련해 무엇이든 탐지한 때에는 곧바로 영사관에 보고

5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二.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二 > (7) [慶尙道 內 匪徒와 民亂에 관한 정보 의뢰]

52)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 2005, 76쪽에서 재인용.



할 것

- 미리 각자 비상식량 등을 마련해 뜻밖의 사태에 대비할 것
- 상황이 절박할 때에는 노약자와 부녀자를 먼저 인천으로 피난하도록 준비할 것. 단 상황에 따라 인천에 전보를 보내 용산에 기선이 들어오도록 해둘 것.
- 거류민 가운데 장년자는 우리 경찰관·영사관원 등과 협력해 방어에 전력을 다할 것

영사는 비상시 필요한 식량 등을 미리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대피처는 인천으로 정했으며 용산에 기선을 파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 영사관의 공권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이를 충당할 장년자들의 협력도 요청하는 등 다방면에서 자국민 보호에 전념하였다. 이와 함께 영사관은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약 100정의 총기를 조달해 자위책을 강구하였다. 이에 거류민 장정과 영사관 순사는 5월 말에 당시에는 광야였던 광희문 밖, 현재 신당동 부근에서 사격 연습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거류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sup>53)</sup>

## 2. 전쟁 정보 수집과 동학농민군·의병 탄압 지원

일본군이 한국에 파견된 사례는 청일전쟁 이전에도 있었으나 장기간 주둔한 적은 없었다. 일본군의 장기주둔은 청일전쟁에서 비롯되어 1945년 패망 때까지 이어졌다. 주둔의 서막이 되었던 1894~1896년은 전쟁 수행을 위해 파병한 일본군이 전쟁 이후에도 잔류하면서 2차 동학농민군과의 병을 탄압한 시기이다.<sup>54)</sup> 이 시기 영사의 전쟁협력 양상과 이를 통한 농민

53) 『국역 경성부사』 2, 527~528쪽.

군에 대한 탄압을 영사의 첩보 활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1875년 운요호가 처음이었다. 운요호사건을 계기로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이 한국에 군인을 파견한 것은 1880년 12월 일본공사관이 설치되어 공사관 호위무관으로 입국한 6명이 최초였다. 이들은 한국과 정식으로 주둔 약속을 맺지 않은 공사관 소속 무관일 뿐이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식으로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명시한 것은 1882년 임오군란의 사후처리를 위해 맺은 8월 30일 제물포조약 5조이다. 이를 계기로 정식으로 일본군은 나고야 주둔 제3사단의 보병 1개 대대(2개 중대)를 최초로 한국에 주둔하였다. 하지만 1884년 일어난 갑신정변과 이의 처리를 위해 1885년 4월 청일 양국이 체결한 텐진조약에 의해 한국 주둔 일본군은 같은 해 7월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규모의 정식 군대를 주둔한 것은 1894년 6월 한국의 청군 파병 요청이 계기가 되었다.

청국군과 일본군의 동시 주둔으로 청일전쟁은 개시되었다. 전쟁의 승리는 정보 우위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상대방 군대의 정보가 필수적이었다. 영사는 청국군의 동정을 파악해 이를 공사에게 전달되었다. 청일전쟁기 영사가 파악한 청국군의 동정은 전쟁 수행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무로다 부산영사는 스키무라 임시대리공사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무로야마는 “동학당의 근황에 관한 각지의 보고가 육로로 계속 회부되어 하나하나 자세히 알고” 있는데 지난 번 보낸 서신 중에 “음력 4월 11일 忠淸監司 전보에 ‘淸營隊官處’운운한 구절이 있고, 또 17일자 發 제86호 貴信 중 양

54) 1894~1896년은 2차 동학농민군과 전기 의병의 활동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 역사학계는 동학농민군과 의병을 구분하여 활동 양상과 성격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달리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일본영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학농민군과 의병을 편의상 ‘농민군’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일본의 관점에서 동학농민군과 의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차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력 4월 16일 초토사의 전보에 “請來淸兵一枝以爲調用如何”의 구절이 있는 바, 이 淸營이라고 말한 것과 혹은 淸兵이라고 말한 것은 충청도의 營 혹은 兵이라는 뜻인지 또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一報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청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재차 문의하는 장면이 있다. 이에 대해 스기무라는 “그것은 해석하신 바와 같이 하나는 “忠淸道 淸州兵營”이고 또 하나는 “淸國兵을 청하여 와 調用하면 如何”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주었다. 즉 문서상 ‘청영’은 ‘청주 병영’이고 ‘청병’은 청국군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청국군이 파병되기 이전부터 부산영사는 청병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는 실제로 청국이 파병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다음의 기사는 청국 상선이 청국군 천 명을 싣고 아산에 상륙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청국군 파병 상황에 대해 파악한 바를 공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 京第34號

淸國 商船 海定·海晏號가 午莊으로부터 淸軍 1,000명을 싣고 6월 10일 內島 앞바다에 정박하다가 오후에 병사를 상륙시키기 시작했다. 상륙선으로는 조선 배를 이용했는데 큰 배에는 50여 명, 작은 배에는 13~14명을 태워 대략 17~18마일의 해상에서 속속 牙山 상륙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런데 상륙장의 개펄이 깊어서 모두 조선인이 병사를 모두 업어서 상륙시켰다. 부대가 집합하기를 기다렸다가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나와 깃발을 세우고 屯集하였으며 그곳에서 야영한다고 하였다. 本軍의 출발일이나 진군할 방향은 확실히 알 길이 없었다. 장교들은 상륙대를 뒤따라 아산현으로 출발하였다고 하며 또 행정·해안호로부터 온 1,000명의 병정이 모두 상륙하면, 아산 외곽으로 나가 前軍과 합세하여 다시 公州로 진군할 것이라고 한다. 前軍이 아산 외곽에서 출발하는 것은 2, 3일 후가 될 것이다.

청국 상선 海定·海晏號가 한국으로 파견되어 천 명이 상륙한 뒤 이미 상륙해 있던 군대와 합류한다는 내용이다. 또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합류한 군대의 항방과 진군 날짜에 대한 영사의 짐작도 포함시키는 등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 청국군의 동정에 대한 영사의 첩보과 그 유통은 적지 않은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의 활약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사의 첩보를 토대로 일본공사는 한국군에게도 출병을 요청해 의병을 진압해 줄 것으로 요청한 사례 역시 산견된다.<sup>55)</sup> 영사는 거류민 보호에 머물지 않고 순사를 당지로 파견해 한국정세를 적극적으로 파악했으며, 일본군이 입경한 이후에는 종군과 인마의 양식을 징발하는 데 앞장서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sup>56)</sup> 이러한 전쟁 협력 또는 지원은 동학농민군과 의병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사의 정보 탐문은 “동학도가 그곳 근방 도처에 몇 명씩 대오를 이루어 잠행”한다거나 “지방의 부잣집에 의연금품을 청한다는 풍문”, “6월 9일 芝罘으로부터 입항한 淸兵船 操江號에 적재하여 들어온 병기는 아래와 같다”며 병기 종류와 개수 등을 나열하였다. 또 “6월 11일 오전 牙山으로부터 입항한 漢陽號 승선원의 말에 의하면, 동월 8일 청나라 招商局 기선 圖南號로 청군 1,000명이 아산항에 닿자 곧바로 상륙하였다. 다음날 9일 海晏號로 다시 500명쯤, 10일 오후 海定號로 600명쯤이 도착하였지만, 11일 漢陽號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는 두 척에 탄 청군은 상륙하지 않았다. 또 청군함 平遠號는 9일 오후 아산을 출발하고 잇따라 10일 밤 청군함 超勇號가 입항하였다. 또 前記 海晏號에는 붉은 바탕에 ‘葉’이란 한자를 적은 큰 깃발을 걸고 있었다고 한다”는 정보와 “청군 중 圖南號로 도착한 자 대략 1,000

55) 『주한일본공사관기록』1권, 「嶺南東徒 討伐作戰의 監司 혹은 代官指揮와 從軍員飭 派要請」

56)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 2005, 77쪽.

명, 海晏號로 도착한 자 대략 5백 명은 이미 상륙하였다. 그리고 海定號로 도착한 500명은 오늘(6월 12일)상륙할 예정이다. 또 위 陸兵 2,000명 중 2·300명은 아산에서 대략 10리 되는 本街道에 투입했다고 한다. 어제 11일 밤 청병 500명 정도가 아산읍에서 10리 되는 해안의 산상에서 야영하였다. 또 아산 해안에서는 청나라 쌀 200포, 탄약 500발들이 34상자를 쌓아 놓은 것을 보았다고 한다”고 하는 청국군과 동학농민군의 동정을 소상히 전해주었다.<sup>57)</sup>

일본영사는 첩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들이 전선을 끊는 행위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水原府의 수비가 매우 허술하므로 仁川港에 있는 우리(일본-필자)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하라며 군대 파견시 군대의 공백까지 염려하여 후방지원까지 고려하는 치밀한 의견까지 덧붙였다. 이를 받아 본 한국 외무대신 김윤식은 일본 공사에게 “東匪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貴 教導中隊를 파견하는 것 외에 統衛兵 200명과 江華兵 100명을 별도로 파견”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처럼 영사의 탐문과 그에 따른 정보 유통은 일본군의 움직임에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한국군과의 공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sup>58)</sup>

이처럼 영사에 의한 첩보 활동은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를 활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취합한 정보로 일본에 의한 동학농민군과 의병탄압은 단순히 무력의 우위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의병봉기 당시 일본군이 농민군을 진압한 것은 양측의 대등한 교전이라기 보다 일본군에 의한 ‘제노사이드(Genocide)’로 보는 견해

57) 『주한일본공사관기록』1권, 二.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二 > (26) [暴民實況 및 淸·韓兵動靜偵察彙報]

58) 『주한일본공사관기록』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 (27) [華城守備交替兵의 急派要請과 朝鮮軍 領率官姓名의 問議에 關한 交信]

가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농민군 학살이었다. 이는 농민군과 일본군 사이의 무기와 전술의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지만 그 외에도 한국정부의 군대와 民堡軍(反農民軍) 그리고 일본군 밀정과 같은 농민군에 대항하는 조직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덧붙여<sup>59)</sup> 일본영사가 첩보로 취득한 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주한일본영사의 영사보고와 청일전쟁기 첩보 활동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개항기 일본영사는 한국 내 정보를 취득·수합·정리하여 영사보고서 또는 보고·첩보의 형태로 공사와 본국 외무성에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본이 획득한 정보원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통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의 한국 병탄은 군사력과 외교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한반도 전역에 상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군을 이식·이주시켜 이들로 하여금 상업상의 이익과 한국에 관한 소상한 정보를 파악하여 침탈의 토대로 활용하였다. 이는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탄했을 당시 전국적으로 아무런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일본이 한국민의 대일 인식을 파악하고 전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사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

59) 박맹수, 「동학농민혁명기 在朝日本人의 전쟁협력 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100~101쪽.

과 이를 활용하는 대강의 상황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영사는 1858년 개항하고 1872년에 중국 상해에 처음으로 영사를 파견할 당시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영사보고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후 태정관은 1874년 11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영사에게 무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1875년에 이르러서야 '무역보고'의 형태로 정식 영사보고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영사보고는 1890년 7월 「帝國領事報告規定」으로 완비될 수 있었다. 한국에 영사가 파견될 당시 영사 보고는 『勸商雜報』의 형태로 발행되기 시작해서 『輸出入商況月報』, 『商務局雜報』, 『通商彙編』, 『通商報告』, 『官報(通商報告)』, 『通商彙纂』의 순으로 제호를 바꾸고 내용과 체제 또한 변화하면서 발달했다. 주한일본영사 역시 이러한 영사보고 편제에 따라 정기·부정기의 형태로 간행되어 對韓 통상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였다.

둘째, 주한일본영사는 개항장 내에서 활동하며 개항장 내 거류민을 보호하고 무역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본 임무였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영사의 정보 활동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내지행정권을 발급받아 한국 내지에서 활동하는 일본인의 보호와 전쟁에 필요한 적국에 대한 정보 취득, 나아가 동학농민군과 의병에 대한 정황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본영사는 영사관 소속 경부·순사를 적극적으로 정보원으로 활용했으며 일본인 상인과 일본군 수비대를 내지로 잠입시켰다. 또 친일적인 한국인을 고용하여 일본인으로서 밀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파견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많은 사료를 정리하여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가 일본 정부의 상부로 유통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재현할 수 있었고 그 핵심 주체가 바로 주한일본영사였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영사는 청일전쟁기라는 격동기에 다양한 정보를 확보

하여 이를 거류민 보호에 활용하였다. 대개 거류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거류민의 생활과 상업을 안정시킬 목적이었다. 아울러 영사가 획득한 정보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정보활동에 초점이 맞춰졌거나 일본군수비대와 한국 정부군이 동학농민군과 의병을 탄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영사가 취득한 첩보를 통해 한국군과 일본군의 공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항기 주한일본영사는 개항장을 근거지로 삼아 한반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자국민과 한국민을 활용해 전반적인 정보활동을 하였으며 이는 거의 대부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본 영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첩보활동은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데까지 두루 미쳤다. 일본은 개항기 어수선한 한국의 정세 속에서 정보 선점의 우위를 유지하며 한국을 병탄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일본의 한국 병탄은 무력병탄이 주요했지만 이와 더불어 “정보 우위의 병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11.15. 투고 / 2020.12.16. 심사완료 / 2020.12.24. 게재확정)



[Abstract]

Utilization of a Consular Report and 'Intelligence' of Japanese Consuls in Kore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1894~1896)\*

Choi, B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l condition that Japanese consuls illegally obtained and utilized information targeting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Japanese Consuls in Korea played a key role in obtaining, collecting, and arranging information in Korea and supplying them to diplomatic ministers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their own country in a form of reports and intelligence during the open port period. Nevertheless, we have not taken notice of information collectors of Japanese consuls and have not been interested in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until now. As a result, the recognition that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was unilaterally done by military power and diplomatic power was dominant. By the way, Japan made different types of people including merchants move and migrate to the whol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seek commercial interests, and collect detailed information on Korea so that they could be utilized as the foundation of dispossession. Especially in the chaotic situation of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B5A07092435)

the Sino-Japanese War, the fact that Japan stabilized its fellow countrymen in international settlements by utilizing intelligence or supported and cooperated with the Japanese military to be advantageous for its war was confirmed. Awareness of Korea through these information was the high level that Korean people could not resist on a national scale when Japan annexed Korea in 1910. That is, espionage of Japanese consuls in Korea can be found to be very beneficial to understand Korean people's recognition of Japan.

□ Keyword

Japanese Consul in Korea, A Consular Report, Intelligence, Spy, Grass, The Sino-Japanese War, Donghak Peasant Army

[참고문헌]

- 高尾新右衛門, 『元山發展史』, 啓文社, 1916, 338쪽.
- 『국역 경성부사』
- 『부산부사원고』
-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 2005.
- 『駐韓日本公使館記録』(국사편찬위원회 편)
- 김상기 편역, 『일본외교사료관 소장 한말의병자료 I·II』,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 권구훈, 「일제 한국주차헌병대의 헌병보조원 연구」, 『사학연구』 55·56, 1998.
-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2013.
- \_\_\_\_\_, 『한말 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남영우, 「일본군 호남 의병토벌대의 진중일지에 이용된 전투약도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7-3, 2012.
- 박맹수, 「동학농민혁명기 在朝日本人의 전쟁협력 실태와 그 성격」,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36, 2010.
- \_\_\_\_\_,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의 정보수집활동」, 『역사연구』 19, 2010.
- 신창우, 「憲兵補助員制度の治安維持政策的意味とその實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9, 2001.
- 신주백, 「湖南義兵에 대한 日本 軍·憲兵·警察의 彈壓作戰」, 『歷史教育』 87, 2003.
- 이승희, 「한말 의병탄압과 주한 일본군 헌병대의 역할 -이토 히로부미의

- 한국 치안구상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2008.
- \_\_\_\_\_, 「일제의 의병 ‘토벌’기록과 주한일본군 헌병대(1907-1910)」, 『동아  
시아고대학』 21, 2010.
- \_\_\_\_\_, 「통감부 초기 일본군헌병대가 운용한 한국인밀정 -한국주차군(韓  
國駐劄軍)의 기밀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학』 44,  
2017.
- 조재곤, 「러일전쟁 이후 의병탄압과 협력자들」, 『한국학논총』 37, 2012.
- 한우근, 「개국 후 일본인의 한국침투」, 『동아문화』 1, 1963.
- 홍순권, 「한말 경남지역 의병운동과 일본군의 의병 학살」, 『군사연구』  
131, 2011.
- \_\_\_\_\_, 「한말 일본군의 의병 진압과 의병 전술의 변화 과정」,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45, 2013.
- 홍영기, 「한말 호남의병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64, 2016.